

전주대학교 농산물인증센터 규정

(제정 2007. 6. 8.)

(제명변경 2016. 1.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 (이하 “본교” 라 한다) 농산물인증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

제2조 삭제 <2016.1.1.>

제3조(위치) 센터는 본교 산학협력단에 둔다. 다만, 운영 및 관리는 농생명융합기술원에서 한다.

제4조 삭제 <2016.1.1.>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

1. 농산물 품질 인증 사업
2. 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기술보급
3.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
4. 농업 관련 기술지원
5. 농업 관련 산학협력
6. 대한 농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자료의 제공
7.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센터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농생명사업지원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센터에 인증심사부와 인증관리부를 둔다.

[본조개정 2016.1.1.]

제7조 삭제 <2016.1.1.>

제8조(임무) ① 센터장은 센터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총괄한다.

③ 각 부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심사부: 농산물품질인증심사 업무, 인증과 관련된 교육업무
2. 삭제 <2016.1.1.>

3. 인증관리부: 인증심사위원회 운영, 센터운영의 계획수립과 시행,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센터의 홍보에 관한 사항, 센터의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업무, 일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4. 삭 제 <2016.1.1.>

제3장 삭 제

제9조 삭 제 <2016.1.1.>

제10조 삭 제 <2016.1.1.>

제11조 삭 제 <2016.1.1.>

제12조 삭 제 <2016.1.1.>

제4장 인증심사원

제13조(구성 및 자격) ① 심사원은 상근심사원과 비상근심사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② 심사원은 농산물과 축산물을 각각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원의 임무)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검토
2. 서류심사, 농장심사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3. 인증농가 사후관리
4. 인증심사와 관련한 토양, 수질, 농산물 등에 대한 시료의 채취
5.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심사원의 준수사항(윤리규정))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인증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2. 심사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증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한다.
3. 인증업무(심사)수행 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친절한 자세로 심사하여야 한다.
4.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인증심사를 지정 받았거나 기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피신청을 하여 심사를 기피하여야 한다.
5. 인증업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서 아니 된다.
6. 공정하고 정확하게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고, 거짓 또는 허위로 심사 자료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심사 시 습득한 경영 및 생산기술 등 인증신청자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인증업무 종사 임직원은 친환경농업육성법제24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적용을 받음

제16조(인증심사원의 윤리규정 위반 시 처리기준) ① 인증심사원이 윤리규정을 위배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표 1 위반 시 처벌기준(상근·비상근 심사원)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인증심사원의 처벌은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당사자에 대한 청문을 거쳐, 위반경 중에 따라 처분하고,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처분기준이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벌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규정은 최근 2년간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인증심사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별표 1]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과는 별도로 전주대학교 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복무규정 및 징계규정 등에 의하여 징계를 하며, 처분에 의해 인증심사원의 자격이 취소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운영

제17조(재원) 센터의 재원은 신청수수료, 교육참가자 수수료, 학술 및 용역 사업수입금, 기타기부금, 교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18조(간접비용)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센터 및 연구원이 외부로부터 수주하는 연구비의 일부를 간접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9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 유치를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친환경농업육성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산물품질업무와 관련하여 정하는 규정 및 업무처리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위반시 처벌기준(상근·비상근 심사원)

준 수 사 항	위반시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인증신청인으로부터 심사 전후로 향응, 금품, 선물 등을 받은 경우	자격취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심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자격취소		
공정성·정확성·투명성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의	경고	자격취소
잘못된 정보와 거짓으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주의	경고	자격취소
심사시 습득한 경영 및 생산기술 등에 대한 인증신청인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주의	경고	자격취소
기타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주의	경고	자격취소